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15
----------	-------

발의연월일 : 2026. 8. 10.

발 의 자 : 정성국 · 안상훈 · 박정훈
유용원 · 이성권 · 김용태
김은혜 · 곽규택 · 정동만
이소희 · 김대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20% 세율, 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법안)은 시행되었으나,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및 명료화하는 관련 법률(2단계 법안)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구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과세 인프라 등 역시 미비한 상황임.

또한 주식 등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선 과세 시행일을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적 혼란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필요함.

이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제5항 등).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각각 “2030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2조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산)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u>2027년 1월 1일</u> 전 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 산의 취득가액은 <u>2026년 12월</u> <u>31일</u>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 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 으로 한다. ⑥ · ⑦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 다. 1. (생 략)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 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 한다), 제21조제1항제27 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2030년 1월 1일</u>----- ----- -----<u>2029년 12월</u> <u>31일</u>----- ----- -----. ⑥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 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 조제3호·제4호, 제119조제12 호가목·과목, 제126조제1항 제3호, 제127조제1항제6하다 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 조제12항·제16항·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u>2027</u>	
<u>년 1월 1일</u>	<u>-2030</u>
3.·4.(생략)	3.·4.(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하다 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u>2027년 1월 1일</u>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 ----- ----- ----- ----- ----- ----- <u>-2030년 1월 1일-</u> ----- -----.
② 제127조제1항제6하다목의 개정규정은 <u>2027년 1월 1일</u>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	② ----- <u>-2030년 1월 1일-</u> -----

터 적용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u>2027년 1월 1일</u>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제16항·제17항의 개정규정은 <u>2027년 1월 1일</u>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2 <u>030년 1월 1일</u>-----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 ----- -----2030 <u>년 1월 1일</u>----- -----.
--	--